2023년 마리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O 감사기간 : 2023. 03. 13. ~ 03. 16.(4일)

O 감사범위: 2020. 03월. ~ 감사일 현재

O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계약, 물품관리), 농정, 세정, 복지분야 적정 처리 여부

- 시설공사 집행(관리) 적정성 및 준공 시설물의 사후관리 실태 등

Ⅱ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건)			재정상(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계	환수	추징	계	주의	훈계	경징계	중징계
계	30	16	14	14,414	8,819	5,595	_	_	_	_	_
감사결과 처분요구	22	13	9	14,414	8,819	5,595	_	-	-	_	_
현 지 조치요구	8	3	5	_	_	_	_	_	_	_	_

Ⅲ 주요 지적사항 요약

① 회계·계약분야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기관운영·시책추진) 집행내역 미공개 및 기한 초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되,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최소 분기마다 공개(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 마리면에서는 총 59건, 13,204천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음.

2] 계약이행 보증업무 처리 부적정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 추가 계약보증서 미요구

- ○「지방계약법」등 규정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중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 또는 증액된 금액만큼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계약 이행 보증을 확보하여야 하나,
- 마리면에서는 '◈◈◈◈ ◈◈◈ 인근 축대정비공사' 등 2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내용(계약금액 증액, 계약기간 연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된 내용의 추가 보증서(보증금액 증액, 보증기간 연장)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위탁처리 부적정

지정폐기물(슬레이트) 분리발주 無, 석면해체업자에게 부적정 일괄발주

-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등)은 석면 해체·제거(공사)와 분리하여 적법한 자격을 갖춘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발주 처리하여야 함에도,
- 자격요건이 없는 석면해제·제거업 등록 업체에게 일괄 발주하여 처리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물품(관급자재)구매 시 검사·검수 업무 소홀

◇◇ ◇◇◇ 세천정비공사 등 2건, 관급자재 물품검사조서 미작성

○ 시설공사의 관급자재가 납품한 때에는 검사자(공사감독공무원)와 검수자 (물품출납원)는 물품의 이상 유무와 계약수량 납품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감사자·검수자가 연서 날인한 물품검사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검사조서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 마리면에서는 '◇◇ ◇◇◇ 세천정비공사' 등 2건의 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경로당 개·보수공사 분리발주 추진 부적정

사업시기·동일 구조물공사, 통합발주 노력 없이 분리발주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등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 마리면에서는 사업시기 및 공종이 유사한 총 14건, 123,311천원의 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통합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시분야

1)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 처리 부적정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313천원 감액(환수) 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 할 수 있고, 건설 공사 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여야 하나,

- 마리면에서는 2021. 10. 22.부터 2022. 12. 20.까지 시행한 "◆◆ ◆◆
 ◆◆ 용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착공한 후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 하였음에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313천원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 시행 전 소하천 점용허가 미이행

소하천 구역 내 인공 구조물 설치공사, 소하천 점용허가 미이행

- O 소하천 구역에서 인공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소하천 관리청에 소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공사하여야 하나,
- 마리면에서는 '◉◉◉ 소하천 정비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구간 내 소하천 횡단 파형강관과 BOX의 구조물이 소하천 구역에 해당되어, 소하천 관리청의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하여야 하는 데도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3)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목적 외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674천원 과다지급

-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정산을 할 때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실적 서류를 검토·확인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를 하여야 하고 간접공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 마리면에서는 '⑩⑪⑪⑪⑪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실적을 도급인이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정산(감액조정 등)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비 674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등 663건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 ○「지방계약법」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최종 하자 검사조서와 함께 결과를 제출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 마리면에서는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663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비 6,956천원 과다 지급

○ '●●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5건에 대하여 설계내역서에 따른 현장 소운반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6,956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③ 세무분야

1)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 누락, 추징

취득세 미신고 가설건축물(3건), 3,207,520원 과세 누락

-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마리면에서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3,207,52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추징

고유업무 외 사용 부동산, 재산세 983천원 부적정 감면(과세누락)

-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마리면에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983,690원을 부적합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3)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추징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법인, 재산세 854천원 부적정 감면(과세누락)

-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감사일 현재까지 과세대장 정비를 소홀히 하여 자격이 없는 농업경영 정보 미등록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5개소)에게 재산세 854천원을 부적합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4) 분리과세 부적정에 따른 재산세 누락, 추징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미사용 토지, 재산세 549천원 부당 누락

-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세율별도 적용)로 구분하여 과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 마리면에서는 학교법인(◎◎학원)이 소유한 토지가 교육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당하게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

4 복지분야

1)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 모니터링 미이행 및 상담결과 미보고

-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종결 후 9개월 내 2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마리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종결자인 ★★★ 등 4가구에 대하여 통합 사례관리가 종결되었음에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담결과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본인 급여 희망자의 본인관리 확인서 미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행복e음시스템에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마리면에서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를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이 급여관리를 희망한 자에 대해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행복이음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폐기 관리 소홀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 미송달 및 시스템 미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장애인 및 법정 대리인 등에게 송달하고, 회수 및 폐기된 장애인등록증은 행복이음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 마리면에서는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등록증이 말소된 자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거나 행복이음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농림분야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부합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서 부적정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인 읍·면장은 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신청인의 자격증명발급요건 부합여부를 확인·심사하여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법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일,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발급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나,
- 마리면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의 소유 면적을 초과하였거나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 였음에도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 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규대상자 등록 및 조사 소홀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보고 없이 대상자를 확정, 직불금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과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담당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규신청자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지급 대상농지 종사여부, 경작여부 등 현장확인(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에도,
- O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검토 보고도 없이 대상자를 확정, 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 협의 농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부당 지급

- O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 할 수 없음에도
- O 마리면에서는 마리면 ☆☆☆ ***-*번지 등 4필지의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기타분야

1) 기간제근로자 고용 · 산재보험 미신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신고 미이행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역 등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사업의 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 마리면에서는 6개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면서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또는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확인 소홀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세대주·세대원, 이장, 관계 공무원의 서명·날인 누락

- ○「주민등록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할 이장에게 사후확인서를 보내고 이장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관계 공무원은 사후 확인서용 자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시 사후확인용 자료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이장, 관계 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